

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6. 3. 20.>

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(제56조제2항 관련)

건당 감정평가금액	기준수수료
5천만원 이하	25만원
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	25만원+(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11)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74만 5천원+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9)
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19만 5천원+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8)
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	439만 5천원+(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7)
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	789만 5천원+(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6)
5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	3,189만 5천원+(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5)
1,0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5,689만 5천원+(1,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4)
3,000억원 초과 6,000억원 이하	1억 3,689만 5천원+(3,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3)
6,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	2억 2,689만 5천원+(6,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2)
1조원 초과	3억 689만 5천원+(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× 1만분의 1)

비고: 관할 세무서장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가격산출 근거자료, 가격 형성요인 분석, 적용된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.